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6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강득구·김기표·김 윤

문대림 • 민병덕 • 양문석

이인영 · 이재정 · 이학영

임광현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을 부각하여 투·개표 조작 의혹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등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

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2(선거사무 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 관인·개표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사무를 방해 (선거사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4조의2(선거사무 방해죄) 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u>공</u>
	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공정선
	거지원단원, 투표관리관 · 사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사전
	투표사무원 • 개표사무원, 투표
	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 • 개표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자의 선거사무를 방해(선
	거사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
	를 포함한다)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